

여행불편보상담보 안내자료

1. 보상하는 손해

1)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

- ① 연결항공편의 결항, 실제 도착시간의 **4시간** 내에 피보험자에게 **대체적인 운송수단**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
- ② 항공편이 **4시간이상 지연**, 취소되거나 **과적**으로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**4시간** 내에 **대체적인 수단**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



위와 같은 손해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보상

출발 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**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비용**

- ① **식사, 간식, 전화통화**
- ② **숙박비,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**, 수화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**비상의복** 및 **필수품 구입비용**. 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.

2) 수화물 도착 지연

- ①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**6시간**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



위와 같은 손해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보상

- ① **비상의복과 필수품**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

3) 수화물 손실

- ①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**손실**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**24시간**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(이 경우 해당 수화물은 **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**)



위와 같은 손해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보상

- ② **의복과 필수품**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한 후 **120시간** 내에 발생한 비용

2.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1) 명시적,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,해,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
- 2) 피보험자, 수혜자에 의하거나 이를 위해 행해진 불법적 행동
- 3) 교통수단의 조작자, 조종사로 종사하는 상황에서의 손실
- 4) 세관이나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
- 5) 피보험자가 수화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
- 6) 수화물의 손실에 대해 항공사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않은 경우
- 7)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화물을 포기하는 경우

3. 보험금 청구 구비 서류

- 1) 공통 구비서류 : 보험금 청구서, e-ticket, 피보험자 여권 사본 및 출입국 사실 증명서, **항공사 확인서**
 - 2) 손해 입증 자료 (구입 일시/내역/장소가 확인 가능한 영수증에 한함)
 - ① 결항/지연/취소/과적에 의한 탑승거부로 4시간 내에 대체(항공)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
 - 식사, 간식, 전화통화 영수증
 - 숙박비,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, 수화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 의복 및 필수품 구입 비용 영수증 (단,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)
 - ② 수화물이 6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
 - 비상 의복과 필수품 구입 비용 영수증
 - ③ 수화물이 24시간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
 -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의복과 필수품 등의 구입 비용 영수증
- ※ 발생 영수증의 경우 반드시 구입 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합니다.
- ※ 항공사 확인서의 경우 결항, 지연, 과적에 의한 탑승거부 등 항공편 또는 수화물의 지연 사유와 지연된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 (항공사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여백에 해당 사항을 별도 기재바랍니다.)